

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

제정 1998. 1. 17 조례 제 107호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일부개정 2015. 7. 6 조례 제1463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7. 12. 11 조례 제1733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9. 7. 1 조례 제192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>

제2조(자격 및 신청방법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(이하 “대학생”이라 한다) 중에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(이하 “연수”라 한다)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용인시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를 통하여 연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, 2019. 7. 1>

1.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
2. 삭제 <2019. 7. 1>

[전문개정 2015. 7. 6]

제2조의2(모집 및 선발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필요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대학생을 모집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, 2019. 7. 1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자 및 그의 자녀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
4. 「의료급여법」상 수급권자
5.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

② 시장은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연수 대학생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[본조신설 2015. 7. 6]

제3조(운영기간) 연수 운영은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 2회 운영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[전문개정 2015. 7. 6]

제3조의2(연수방법 등)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이 시 본청,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, 시 출자·출연기관 등에서 연수하도록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(사회복지시설 등)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.

[본조신설 2019. 7. 1]

제4조(근무 등) ① 연수 대학생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② 연수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③ 소속부서의 장은 연수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, 품위 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④ 연수 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1>

[전문개정 2015. 7. 6]

제5조(실비보상) 연수에 따른 실비보상은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를 준용하여,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[전문개정 2015. 7. 6]

제6조(프로그램 운영)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 시책

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 7. 1]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2015. 7. 6 조례 제146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7. 1 조례 제192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공고하여 시행하는 행정체험연수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서식] <신설 2017. 12. 11>

행정체험연수 근무일지

20 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결	담당자	팀	장	과	장
재					

구 분	내 용
오늘 활동내용	
다음 날 활동내용	
특이사항	
문제점 및 개선사항	